

점용허가 업무처리 지침

(철도시설의 점용료산정기준 제9조제3항관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철도시설의 점용료산정기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철도시설의 점용허가 관련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철도시설의 점용허가 관련업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철도사업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관리자의 의무) ①공단은 점용허가 관련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점용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점용허가를 받을 자로부터 안전사고 예방 및 사고발생시의 조치계획을 제출받는 등 책임한계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③공단은 점용허가 업무의 효율과 고객서비스 제공을 위해 점용허가에 관한 업무절차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점용허가) ①공단이 철도사업법 제42조, 동법시행령 제13조, 동법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철도시설에 대한 점용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면적·허가기간·시설물의 종류·국가귀속대상시설 및 허가조건 등을 명확히 하고, 도면에는 국가귀속대상시설과 영업시설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②공단이 점용허가를 할 때에는 점용허가의 취소요건, 점용허가한 부지의 국가직접사용 또는 공익목적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의 조치사항 등 점용허가 변경 조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여야 한다.

③공단은 점용허가의 종료 또는 점용허가 폐지될 경우 기 점용허가에 따라 설치된 시설물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사항과, 점용허가 받은 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시설물의 설치가 중단될 경우 처리할 사항 등에 대하여 점용허가서 등에 명확히 규정 하여야 한다.

제6조(점용허가의 변경) 공단은 점용허가 받은 자로부터 점용허가한 대지 면적의 변경, 시설물의 종류·구조 및 면적의 변경 등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철도사업법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7조(국가귀속 결정 및 등기) ①공단은 점용허가 받은 자로부터 국가에 귀속시키고자 하는 시설의 준공통보를 받은 경우 관계서류 및 도면을 검토하여 국가귀속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정내용을 점용허가 받은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점용허가 받은 자로 하여금 국가에 귀속되는 재산과 점용허가 받은 자의 소유재산을 일괄하여 등기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점용허가 받은 자 등의 사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는 재산을 우선 등기할 수 있다.

제8조(점용허가의 협의) 공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허가 이전에 건설교통부장관과 사전협의 하여야 한다.

- ①연면적이 30,000m²이상인 시설물의 점용허가
- ②총공사비가 500억원 이상인 시설물의 점용허가

제9조(정기보고) 공단은 당해 연도의 점용허가 사항을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감독) 건설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단의 관련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